

2025 퍼펙트 세법학 II 추록

유은종 저 | JDI북스 출간
2025년 4월 7일 발행

- 이 추록은 『2025 퍼펙트 세법학 II』 제16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이 추록은 출간 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그 밖의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I.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1-27	하 9	이 경우 ㉠, ㉡별로 각각	이 경우 ㉠, ㉡, ㉢별로 각각
4-27	하 6~5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부터	취득일부터
4-48	상 3	③ 농업소득 외 소득	③ 작물재배업 외 소득
4-65	상 3	2025년도에	2018년도에
4-92	하 11	2024년	2026년 초

II. 법률 추가 개정사항(2025.3.14. 개정)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4-23	상 5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단,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서술하지 마시오)
4-24	상 2	(ㄱ)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ㄱ)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4-24	상 8	(ㄴ) 국가전략기술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아래 (ㄷ)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4-24	상 12 아래 추가	〈신설〉	(ㄷ)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 30%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 25% ㉢ 위 ㉠ 및 ㉡ 외의 경우 : 20%
4-24	상 13	(ㄷ) 위 (ㄱ) 및 (ㄴ)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ㄷ) 위 (ㄱ)부터 (ㄷ)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4-26	하 8	경우이어야 한다.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4-27	상 11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근로자가
4-28	하 9~8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4-29	상 8 (표내용)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근로자.
4-43	하 12	10년 이내에 수도권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해 수도권
4-45	하 9	15%	15%(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4-69	하 7	다만, <u>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한다.</u>	다만, 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②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한다.
4-69	하 5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4-102	상 3	서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다만,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4-9쪽 상1~6행 표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업 종	
		도매업 등*	그 외의 감면업종
소기업	수도권 내의 지역	10%	20%
	수도권 외의 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내의 지역	—	일반 서적 출판업 : 10%
	수도권 외의 지역	5%	15%

◆ 4-29쪽 하13~8행 참고 내용을 다음의 세부사항으로 대체해 주세요.

 세부사항 경력단절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② 위 ①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③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4-68 표(하8~5행)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한도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개정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개정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개정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